

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7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. 2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군세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함.(안 제2조)
- 나.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(안 제11조)
- 다.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 부담완화(안 제16조제2항)
- 라.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.(안 제26조)
- 마.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함.(안 제27조)
- 바.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.(안 제28조)
- 사.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한 현행 고성군세감면조례는 동 조례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의 규정에 의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경상남도 세정 13400-11612(2000.11.25)호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- 금번 개정할 군세감면조례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감면내용과 감면범위의 신설, 감면범위 축소 등 상위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게 적용시킴으로서 군세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군세의 연간 세수결합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
- 답 : 현재 정확히 추계된 통계가 없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